

Code of Business Ethics

「JI Informartive」

Chapter 1.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Purpose) 이 규정은 「JI Organize」설립 목적 및 사업에 필요한 행정사무 윤리를 규정하여 건전한 학술활동을 도모하여, 동북아시아권 연구자의 학술적 성과에 대한 국제적 가시도를 높여 지역 연구의 세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Article 2 (Target of Application) 이 규정은 편집국장 및 업무 의뢰를 의뢰받는 실장에게 적용된다.

Chapter 2. Secretariat Ethics

Article 3 (Secretary General) 편집국장의 직무윤리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에게 제공할 전문적인 정보제공 능력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윤리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한다.
2. 회원에게 제공할 업무와 관련된 회원의 신상정보 일체에 관하여 비밀을 엄수한다.
3. 회원에게 제공할 업무에 실제 활용되는 인력, 장비, 난이도 등을 객관적으로 산출하여 회원에게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Article 4 (Manager) 실장의 직무윤리는 다음과 같다.

1. 의뢰받은 업무의 내용을 그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다.
2. 의뢰받은 업무를 처리할 때 지적재산권 등의 표절, 위조, 변조 등을 판별하여야 한다.

Chapter 3. Education of Business Ethics

Article 5 (Composition) 대표는 직무윤리에 관한 사항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시 직무윤리교육을 실시한다.

Article 6 (Target) 대상은 편집국장, 실장으로 한다.

Article 7 (Interval) 교육은 아래의 교육방식을 따른다.

1. 오프라인 강좌
2. 온라인 강좌
3. 교육자료 배포

Chapter 4. Constitution of Commission for Examination of Business Ethics

Article 8 (Constitution) 직무윤리 심의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직무윤리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대표가 된다.
2. 「JI Organize」의 회장(President)들이 위원이 된다.(총 10명)

Article 9 (Function) 직무윤리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사무 직무에서 윤리적 측면의 위반에 관한 사항
2. 기타 직무윤리에 관한 사항

Chapter 5. Rules of Commission for Examination of Business Ethics

Article 10 (Report of Informant)

1. 직무윤리 위반 행위와 관련된 제보는 본회 실명으로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보해야 한다.
2. 직무윤리 심의위원회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직무윤리와 관련된 상당한 의혹이 있으면 조사하여야 한다.

Article 11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1. 직무윤리 심의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직무윤리 심의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한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때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직무윤리 심의위원회는 자료의 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직무윤리 심의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Article 12 (Attendance and Submission of Materials)

1. 직무윤리 심의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조사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2. 직무윤리 심의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조사자는 요구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Article 13 (Protection and Confidentiality for Informant and Examinee)

1. 직무윤리 심의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해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직무윤리 조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외부에 공표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Article 14 (Handling of Wrongful Act of Business Ethics)

1. 부정행위가 제보되거나 인지된 경우에는 위원회가 그 혐의에 대해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피조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조사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3.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결과는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한다.

Article 15 (Guarantee of Opportunity of Objection and Explanation)

직무윤리 심의위원회는 직무윤리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Article 16 (Follow-up Measures)

- 부정행위로 확인·판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후속 조치를 취한다.
 - 피조사자에게 조사결과 발송
 -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 이미 의뢰인에게 제공된 보고서일 경우 통보조치
- 직무윤리 심의위원회는 직무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본회에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Article 17 (Re-investigation)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직무윤리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Article 18 (Follow-up Measures such as Recovery of Reputation)

직무윤리 심의위원회의 조사결과 직무부정행위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Article 19 (Retention and Disclosure of Record)

-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판정이 끝난 이후의 결과는 피조사자 및 직무윤리 심의위원에게 결과를 공지한다.

Article 20 (Resolution) 직무윤리 심의위원회 의결은 전체 재적 심의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Chapter 6. Supplementary Provisions

Article 10 (ETC.)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Addendum

Article 1 (Date of enactment)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January 1, 2025
J-INSTITUTE
